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브로셔 내용은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게시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OPEN

공공누리



관광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 대상자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③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④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⑤ ①에서 ④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참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뽕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종균은 집중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지급 제외, 다만 송이는 별도 증빙하여 인정받을 경우 지급)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지 (지급대상 제외)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수액 및 죽순은 별도 증빙하여 인정받을 경우 지급)
관상산림 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임산물생산업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종류	품목명
그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멸꿀, 바디나물, 병풍삼,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신청서 작성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

신청서 작성

- 임업경영체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신청서 작성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임업경영체 통합포털(www.foco.go.kr)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수령하여 서식에 따라 정보 기재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 준비

▶ 농업인(임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정당권원 및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임차·사용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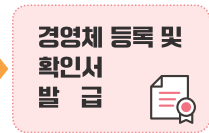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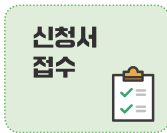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등록 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www.foco.go.kr),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전국 4,400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탭 선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후 출력

- 인터넷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 모바일

정부24 앱 실행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 전국 3,70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26, 읍면동 3,473) **민원창구 방문**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등록혜택

-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 가능
-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 간소화

구분		지원내용	자격요건	증빙자료	
분야	관련기관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 자격 증명	산림청 (1588-3249)	* 임업직불금 * 보조·융자 지원사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경영체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 *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연금보험공단 (1355)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조세감면 (국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업 종사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농협 (02-993-2143~4)	농협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농업인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보건복지부 (129)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업인 확인서
조세감면 (국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협 또는 산림조합 (해당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 문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법인, 농협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인력 등 기타지원	고용부 및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작물재배업) *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일부 지자체 (-)	농민수당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경영체 관련 지원사업 (위 지원사업 포함)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대표 : 1588-3249)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춘천시·원주시·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북부지방 산 림 청	(우)264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124	전화) 033-738-6171~7 팩스) 033-738-6179
강원특별자치도 중 강릉시·동해시· 태백시·속초시· 삼척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고성군·양양군	동부지방 산 림 청	(우)2547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전화) 033-640-8653~8 팩스) 033-640-865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창원시·김해시· 밀양시·양산시· 함안군·창녕군	남부지방 산 림 청	(우)36663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	전화) 054-850-4104~9 팩스) 054-842-7106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부지방 산 림 청	(우)32599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전화) 041-850-5313~22 팩스) 041-850-5304~5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 진주시· 통영시·사천시· 거제시·의령군· 고성군·남해군· 하동군·산청군· 함양군·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지방 산 림 청	(우)55710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전화) 063-620-4655~6 063-620-4645~8 팩스) 063-620-4649

주요 문의 사항

01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는데 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하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 임업경영체등록/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오른쪽 상태창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03

목재생산용 또는 조경수 생산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목본식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신청인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목적으로 등록 가능하며, 임목생산(육림업)과 관상 식물류(조경수)의 등록기준(품목 및 면적 등)이 다르므로 해당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사업시행 증빙자료(조림, 풀베기, 숲가꾸기 등)
- * 조경수 : 사업자등록증(조경수), 조경수 납품확인서, 굴취허가서 등

04

임업경영체 유효기간 및 연장 방법은?

- 유효기간은 임업경영체 등록 또는 최종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법 제4조제2항)이며 유효기간 말로 시 경영정보가 말소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www.foco.go.kr) 등으로 등록정보를 연장·변경하여야 합니다.